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김 은 경*

국문요약

이 글은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문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의 주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실천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21세기 소년사법 제도의 발전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소년사법의 법철학적 토대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I. 들어가는 말

최근 일련의 학교폭력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범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각종 공식통계 및 조사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범죄는 점차 폭력화·저연령화·성일탈 등이 심화되었고, 학생범죄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재범률 역시 강화되고 있다(청소년백서, 1997-2006; 범죄백서, 2002-2005; 김은경·이동원, 2003).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기존의 소년사법정책 및 처우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정책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문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라는 새로운 소년사법 대응모델의 주요 원칙과 가치, 그리고 실천과정의 핵심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21세기 소년사법 제도의 발전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소년사법의 법철학적 토대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의 발전방안과 정책과제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현실과 한계

과연 현행 사법적 처우방안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화된 청소년범죄의 문제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이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소년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년사법체계와 연령범주 문제

요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면서,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됨과 동시에 가

출 및 비행가담 연령도 점차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매스미디어에 드러나듯 심각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아동들(12세미만)의 범죄가담이 심심치 않게 빈발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촉법소년(12-14세) 뿐만 아니라 12세미만의 아동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 소년법원에서 다루어진 아동범죄(7-12세)가 33%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들이 “보다 심각하고 폭력적인 고질적 범죄자”로 발전할 개연성이 보다 나이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3배가 높다는 분석결과(Synder, 2001)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촉법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들며, 지나치게 관대한 처우는 오히려 “제재의 긴장과 두려움”을 해체시켜버림으로써 법 준수의 가치를 부식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주요 연구들은 최초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legal sanctions)가 어떠한가하는 향후 범죄경력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¹⁾

하지만 우리의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12세미만의 아동범죄 및 조발비행자를 적절하게 처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관리와 개입”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단계의 중간처우(지역사회 중심처우)를 거치지 않고, 급격히 교정시설로 수용되는 문제점으로 결국, 재범율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법] 개정논의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하한을 10세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연령인하에 따라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 12세 이상(법원안은 10세 이상)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²⁾이 검토된 바 있다. 각국에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입연령의 하한 및 상한선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연령범주별로 개입의 법적 성격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이다. 하지만, 아동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드시 엄격하거나 형사법적 개입만을 의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 OJJDP의

1) 미국 OJJDP(2001)의 [Child Delinquency Bulletin Series]를 참조하기 바람.

2) 현행 법제도하에서 사회봉사명령과 기준을 맞춘 결과, 현재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치료적 개입인 수강명령은 16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종합전략이 제시하듯, 조기에 비행소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범억제 대책이 될 수 있다(Krisberg et al., 1995:8, 최영신, 2001:114). 최근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의 핵심은 이제까지 소년사법정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7-12세 사이의 아동들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early invention and preven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 연령단계별 이행기적 특성에 초점을 둔 각종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처우의 적절성 부족 및 재범률 증가문제

현행 소년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년보호이념과 정책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최근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율 및 구공판율이 최근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지난 10년(1995-2004)간 평균기소율은 무려 32.3%에 이르며, 구공판율은 약 10%가 넘는다. 또한 구약식 비율도 최근 18%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 10년간 22%를 웃도는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년법원송치율은 지난 10년간 평균송치율은 약 13.4%에 불과하고, 불기소처분율은 56-57%대로 다소 증가하였다. 요컨대, 검찰의 실무관행은 청소년 범죄자들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제도로 다루기보다는, 형사사법체계의 틀 안에서 불기소하든지 아니면 기소하는 양극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더욱이 선도유예자들의 재범률이 1997년 5.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12.2%까지 증가하고 있어서, 소년법의 다루는 현행처우 방식과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청소년백서, 2005:247). 한편, 법원의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전적인 관용을 베풀거나 아니면 수용처우로 다루려는 양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³⁾, 소년형사사건의 경우엔 오히려 실행과 집행유예율이 모두 증가, 성인범죄자에 비해 소년범죄자양형이 최근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10대범죄자들이 성인범죄자들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틀

3) 지난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을 보면, 1호처분율은 큰 변동없이 16%대에 머물고, 보호관찰처분율(제2, 3호), 특히 단기보호관찰처분은 40.2%에서 33.3%로 크게 감소한 반면, 4호처분율 및 소년원 송치율(6호와 7호) 지난 10년 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경향을 보인다. 보호사건 절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처분과 심리불개시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청소년백서, 1997-2006).

안에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에는 소위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소년보호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중간적인 보호 처우단계를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교정시설 수용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범죄청소년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한 합리적 처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재범율의 지속적인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3. 낙인효과의 문제

일반적으로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려는 적극적 근거는 “낙인효과”의 최소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소년법상의 여러 보호처분들(제1호-제7호)이 과연 소년법의 이념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수단)인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다(장영민, 2004:166). 특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활용에 응보적인 요소가 없는 지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학자들은 현행 보호처분이 응보의 성격을 완전히 탈색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소년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 근거하여 예후를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가하지 않고, 여전히 저지른 범죄구성요건과 행위태양, 결과를 고려하는 한에는 이러한 응보의 잔재를 완전히 탈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보호처분의 종류 자체에도 경중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적·예방적으로만 보호처분이 가하여 질 것인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비판한다.

과연, 현행 소년사법에서 다루는 보호처분 절차과정은 형사처분 절차과정과는 달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는가? 일반인에게 있어서, 과연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성격차이가 얼마나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 각 의문의 여지가 있다. 최근의 조사연구(김은경·이동원, 2003)는 보호사건 처리절차 자체가 갖고 있는 낙인인지의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엄격한 처벌)을 경험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각종 처우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가가 핵심과제라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 현행 보호처분이 응보의 색깔을 어느 정도 탈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실질적 의미에서

교육적으로 작용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다.

4. 청소년범죄자 사회재통합 노력의 한계

현행 소년사법제도를 통해서 청소년범죄자들은 초범이후 신분변화를 겪는율이 매우 높다.⁴⁾ “신분변화”는 Braithwaite(1989)가 재범방지기제로서 들고 있는 일상적 삶에서의 공동체 소속감,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ed shame), 상호의존성의 효과적인 실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책실행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요소이다. 비행유발하는 단일한 경로는 없지만, 빈약한 사회적 적응은 공통적인 요소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비행이나 범죄가담은 하나의 중요요소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개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수치심)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의해 관련된다. 수치심 관리(shame management)는 적응적일 수도 부적응적일 수도 있다(Ahmed et al. 2001). 잘못 관리된 수치심은 사회적 행위의 적절성과 일치성을 규율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제재시스템의 기능과 발전을 방해한다. 개인의 내적 제재시스템의 기능이 붕괴될 때, 부끄러움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역기능적·부적응적이 될 수 있다. 즉 용서받거나 회복되지 못한 수치심은 내면화된 채 유지되며, 때론 분노(anger)로서 표출된다. 소년들의 내적 제재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개인들 간에 상호존중을 증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다면적이다. 개인이 해당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경우, 수치심을 자아낸 지역사회에게 부정적인 반응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의 붕괴, 위태로운 반발위험으로 이끌 수 있는 자기보호 모드로 빠질 수 있다. 요컨대, 수치심은 개인의 사회적 온도조절장치로서 사회관계상태를 조절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적응적 관리는 사회관계를 강화하지만, 부적응적 관리는 사회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최우전략은 무엇보다도 “적응적 수치심(adaptive shame)”을 자극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

4) 김은경·이동원(2003)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36.5%가 초범이후 급격한 신분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재통합의 어려움을 겪을 개연성이 그만큼 많음을 의미한다.

역사회의 재통합적 개입노력이 요구된다.

5.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

현행 소년사법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자는 ‘잊혀진 인물’ 또는 단순한 ‘증인’으로서의 지위 그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피해자 권리보호의 소홀은 제2차 피해로 이어지거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시민적 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 소년범의 경우에도 엄격한 형벌보다는 교정 및 보호에 역점을 두어, 처우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온 반면에,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심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아동청소년기의 범죄피해 경험은 성인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긴다. 특히 성폭력 범죄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trauma)을 남긴다는 점에서, 적극적 치료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자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수치심과 죄책감, 주위에 알려지는 것과 악의적 소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심리적 불안 및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피해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 피해이후 정상적 사회생활이나 사회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홍영오·이수정, 2006).

더욱이 현행 형사사법 절차 속으로 들어가면, 이들 피해자들은 세심사법기관을 통하여 제2차 피해자화 과정을 겪는 등 문제해결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세 가지는 ①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감의 확보, ②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표현욕구(이해와 공감욕구) ③ 사건해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사건처리과정 포함)을 위한 필요한 정보지원(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을 알고 싶은 것) 등이다. 최소한 이 세 가지 요소는 범죄피해자사법체계(Victim Justice System)의 핵심내용으로서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지원과 더불어 법률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6. 소년사법에 대한 철학의 부재 및 입법원칙의 명확성 · 우선성의 결여

소년사법에 대한 국가의 기본철학과 “보호이념”의 입법원칙과 패러다임이 불분명하다. 기본철학의 부재는 여러 영역 및 기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입법적 방향(a clear legislative direction)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법원칙의 명확성 부족은 국가책임의 중요성, 청소년 보호와 육성,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 및 권리 등 다양한 관점과 원칙들이 상충할 경우, 우선성의 관점에서 실질적 안내자가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최근 “학교폭력대책”을 둘러싼 각 기관간의 이해관계 상충 및 접근방식의 상이성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행정부처의 기능과 업무성격에 따라 정책목표가 각기 재해석되고, 관련 입법들이 근거하고 있는 가치와 원칙들 간에 순위가 없음으로 인하여, 때론 각 부처간 관련정책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인 양상이 빚어지기도 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참조).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을 둘러싼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및 관련 NGO등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책방안을 보면 시각차이가 너무 커서, 종합적 · 유기적 대응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다기관간 실무규약(protocols)조차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각 부처마다 “청소년보호”라는 동일한 포괄적 개념(umbrella concept)을 사용하지만, 구체화된 정책내용과 이념은 다르다. 무엇보다도 소년사법체계에서는 “소년보호” 이념은 결국 “권위적 간섭주의(paternalism)”⁵⁾으로 귀결되면서 오히려 적법절차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청소년의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를 강조하지만, 실제 보호처분의 교육적 질이 청소년의 필요에 대응하는지 의심스럽다.

5) 권위적 간섭주의란 힘의 행사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간섭 · 자유의 제한 등을 총칭한다. ‘힘의 우열’에서 나타난 자유의 제한 · 침해 · 간섭 등의 문제라고 정의될 수 있다(김정래, 1999:23). 인권중심의 근대적 법률체계가 성립된 후에도 아동 또는 미성년자의 종속적 · 부차적 지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미성년자는 그 능력의 유 · 무에 상관없이 어른과 같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하고, 다분히 획일적인 연령(현재 19세미만)을 기준으로 “반(半)인간”으로 취급한다. 특히 ‘보호’와 ‘양육’의 이름하에 아동의 권리 일정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19세기식 “권위적 간섭주의”(paternalism)는 한국의 법체계 및 모든 사회분야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III.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을 위한 법철학적 토대의 재구성

1. 사법모델(justice model)과 복지모델(welfare model)의 긴장과 갈등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주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누가 그것을 했는가? 그리고 범죄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후자의 질문은 주도 다른 질문, 즉 가장 적절한 처벌, 적어도 청소년범죄의 경우에는 재화를 증진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처우(treatment or service)에 대한 질문과 연결된다. 이 질문은 지난 50년 동안 형사정책적 담론의 주요 관심사였다. 소년사법의 역사를 보면, 청소년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존재하였다. 즉 ‘복지모델(welfare model)’⁶⁾과 ‘사법모델(justice model)’⁷⁾의 대립이다. 실상 형사법체계에서 “소년보호” 이념에 따라 성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소년사법’이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두 가지 이념모델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각국의 소년사법체계를 형성·발전시켜왔다. 벨기에의 범죄학자 Walgrave(1998)에 따르면, 소년사법체계의 발달과정에서 각국은 기본적으로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두 가지 원칙의 종합·절충, 소위 “복지-사법균형(welfare-justice balance)”를 구성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한다(Walgrave et al., 1998:3).

사실상 이 두 가지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타협가능하지 않다. ‘처벌’은

6) 일반형사제도와 구분되는 소년사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관점이 바로 ‘복지모델’로서, “청소년보호”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미성년자의 특성을 감안,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교육적 견지에서 형벌보다는 필요(needs)에 부응한 처우에 초점을 둬으로써 청소년범죄자들을 교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한 접근모델에서는 응보적(처벌적) 성격은 사라져 버리고, 도구주의적인 재화적 접근이 우세하게 된다.

7) ‘사법모델’의 기본 관점은 소년범죄자들을 처우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와 비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모델’은 첫째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다룸에 있어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재범억제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범죄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실, 즉 범죄에 관련된 것이며, 범죄란 개입과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또한 그것은 합법성과 비례성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반면 교육적 '처우'란 미래의 대상, 즉 독립적이고 동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처우는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needs)에 연결되며, 이것은 법률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범죄행위와의 연결은 점차 모호해지고, 비례성은 더 이상 역시 예측될 수 없으며, 공판의 절차적 보증도 희미해지고 있다.⁸⁾

결국, 일반적으로 형법과 교육적 원칙간의 조화는 두 시스템의 단점만을 혼합한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 적법절차 보장의 원칙은 후퇴하였고, 교육적 질(효과) 역시 의심스럽다. 지난 세기동안 이와 같은 비판들은 "처우와 처벌" 선택에 다양한 생각들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과연 민주적 헌법국가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복지적 이익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⁹⁾

새로운 대안모색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테마는 "법 준수"를 이끌어내는 데 처벌(punishment)과 통제(control)의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Wachtel and McCold(2001)은 어느 사회에서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행위규제시스템을 그림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¹⁰⁾

'처벌모델'은 위반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보호와 지원의 수준은 낮으며,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수반한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처벌이나 처우는 이러한 규율방식에 속한다. '관용모델'은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두지만 위반자 책임에 대한 규율 정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 이 방식은 위반자에게 부정적 낙인을 주는 징계나 형사처벌과 같은 규제 대신에 선도나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위반자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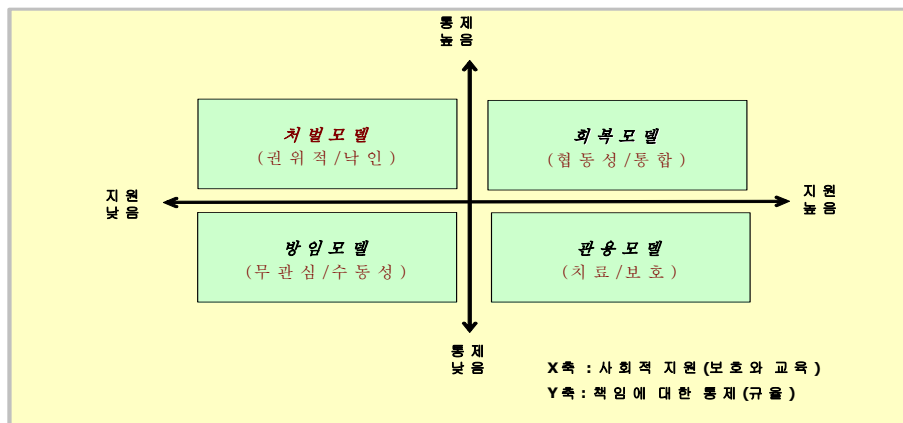
8)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 국제기구들은 미성년자에게 주어지는 법률적 보호로서 최소 규칙과 권고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위 '베이징 규칙'은 전 세계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사법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을 일련의 명백한 조항들(소년들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규칙들)에 관한)을 제시하고 있다.

9) www.afk.dk/eng98/juvenile.htm 참조.

10) Wachtel, T. and T. McCold (2001), "Restorative Justice in Every Life: Beyond the Formal Ritual", in H. Strang and J. Braithwaite(eds.), *Restorative Justice and Civil Society*, Cambridge Univ. Press.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한편, ‘방임모델’은 말 그대로 책임에 대한 규율이나 보호와 지원이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김은경·이호중, 2006:265). 현행 소년사법 제도하에서 소년범 다이버전은 “방임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개연성이 높아서 재검토를 요한다. 한편 ‘회복모델’은 위반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면서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높은 관심을 내포하는 접근법이다.

사회 통제 시스템의 비교 (Wachel and McCold, 2001)



16

사실상 처벌과 통제는 “지배(domination)”에 그 가치를 둔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은 “비-지배적 관계(relationships of non-domination)”에 가치를 둔다. 회복적 사법은 “통제”보다는 “행태적 교육(behavioral education)”이 행위준수를 효과적으로 성취해 내는 지속적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기존 처벌전략은 각 개인들에게 매우 좁고 이기적인 사유방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 초점이 타자가 아닌 오로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치심 관리(shame management) 전략”에 있어서도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Braithwaite(1998)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수치심은 개인의 사회적 온도조절장치로서 사회관계상태를 조절하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적응적 관리는 사회관계를 강화하지만, 부적응적 관리는 사회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수치심(shame)은 개인이 건강한 공

동체의 한 부분이 될 때, 아주 건강한 방식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즉 “공동체(community)”는 다양한 가능성과 생각에 대한 고려, 돌봄, 존중, 차이들을 건설적으로 함께 작업해 내는 과정에 참여의 기회 등을 이끌어낸다.¹¹⁾ 회복적 실천은 수치심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구조화된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한 요소로서 강조된다.

2. 대안의 모색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등장

가. 개념과 원리

최근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은 범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소위 “회복적 사법”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범죄가 해악(harm)에 관련된 것이라면, 정의(justice)란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처리함으로써 단순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과정(justice process)은 오히려 회복을 증진시켜야만 하고 “상처의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회복적 사법의 원칙은 정의과정(doing justice)의 필수요소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공동체(community)를 포함한 삼각 축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범죄통제와 범죄자재활이라는 독특한 접근방법을 지향한다(Walgrave et al., 1998).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인 처벌적·응보적 형사사법체계의 비효율성과 적대성 및 피해자 필요에 대한 배려부족 등을 문제 삼고, 대립적 소송과정을 통한 강제적 해결책의 ‘부과(imposing)’보다는 당사자들 상호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한 문제의 ‘해결(solving)’과 ‘치유(healing)’을 강조한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정의는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악을 치유할 목적으로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 실천의 목적은 자신들의 인생에 범죄가 미친 전체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연관된 문제들을 다루며, 야기된 해악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직접적 대화를 가질 기회를 가지도록 특정 범죄활동으로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safe place)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특정 “제도 유형”이라기 보

11)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Reintegration*, Cambridge Univ. Press.

다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유방식이자 지향(orientation)을 의미한다. 그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Sharp, 1998)

- ① 충분한 참여와 합의의 독려(invite)
- ② 깨어진 것의 치유(heal)
- ③ 충분하고 직접적인 책임(accountability)의 추구
- ④ 분리된 것의 재결합
- ⑤ 지역사회 강화와 미래범죄의 예방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 특성은 피해자 중심성에 있다. 처벌적 응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역할은 필수적으로 축소되어 있고, 국가가 법률위반의 법적 피해자로서 전제된다. 지난 몇 년 동안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피해자가 무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소송에 관한 정보공유, 신고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를 가지는 것 외에는 좀더 적극적인 권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기존 형사체계는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 만일 그러하다면, 누가 그러했고 어떻게 그들 처벌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만 연관된다. 즉 처벌적 응보시스템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있다. 범죄자가 형사소송절차과정에 핵심부분인 한편, 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 책임(accountability)의 문제는 국가관리에 기초한 양형기간으로 대체된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지역공동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Zehr, 1990).

회복적 사법은 21세기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안으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일종의 갈등해결 절차로서 가해자 반성과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형사절차와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로부터의 사과, 피해배상 등을 통해 신변안전감 확보 등 피해극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선진 각국의 소년사법은 회복적 사법의 원칙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UN에서는 형사제재 위주의 사법절차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도록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Miers, 2001).

나. 회복적 사법의 주요 입법례

최근 선진 각국은 회복적 사법이념이 제시한 새로운 실천모델 속에서 ‘복지-사법 균형’의 딜레마로부터 탈출가능성을 모색하는 추세이다. 이는 소위 “대안적 제재”라는 불리는 실험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범례로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mediation),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평화중재/양형써클(circle), 손해배상지역위원회(reparative community boards) 등이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등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마다 회복적 사법의 입법적 지위, 제도적 실천방향 및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영미권 및 독일, 네델란드 등에서는 다이버전(diversion)을 위한 공식적 기회의 하나로서 법률적으로 통합되었고, 벨기에와 프랑스 등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Miers, 2001).¹²⁾

1) 캐나다의 소년사법(YCJA)과 “회합(Conferencing): 2003년 4월에 제정된 캐나다의 새로운 소년사법(YCJA)은 이제까지 비공식적으로 실행되어 오던 다양한 회복적 소년사법 방안들에 대하여 분명한 관심과 원칙을 결합시켜 그 입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소년법은 특별히 “사법외적 조치들(Extrajudicial Measures)”를 중요한 사법절차 과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¹³⁾ 새로운 법(YCJA)은 덜 심각한 위반사건을 법정 밖에서 다루기 위한 많은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경찰과 검사는 다양한 사법외적 조치들로 다룰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년사법(YCJA)의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법경찰은 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referral)”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법률적 근거 하에

12)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책동향은 김은경 (2004a),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13) 새 법은 「사법외적 조치들」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① 피해자 및 공동체에게 야기된 해악의 회복, ② 피해자에게 결정에 참여할 기회 제공, ③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한 조치 ④ 가족, 피해자 및 지역사회의 다른 성원들의 참여 등 ‘회복적 사법’이라는 분명한 대상과 목표를 부각시키고 있다.

회복적 실천방안들은 여러 사법단계(pre-court, post-court, pre-sentence, post-sentence)에서 실행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는 단계는 기소전 전환처우 프로그램이며, 소송절차의 대안으로 많이 활용된다.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는 주로 청소년위반자에 초점을 둔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을 많이 활용한다.¹⁵⁾ 몇몇 지역사회는 소위 “지역공동체사법 포럼(community justice forum)”으로 불리는 과정으로 비슷한 모델을 성인에게 활용하기도 한다(김은경, 2004a).

2) 뉴질랜드의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ing) :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의 하나로 회복적 사법체계가 뉴질랜드에 도입된 것은 1989년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범죄자를 위한 가족회합(FGC)이 고안되면서부터이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협의체를 포함한 회복적사법절차를 성인범죄에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¹⁶⁾ 뉴질랜드의 회합(FGC)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이며, “최초로 입법화에 성공한 회합모델”이다. 회합(FGC)은 기본적으로 아동중심적 및 가족준거적 의사결정과정이다. 즉 가족(확대가족 포함)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care and protection)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키

14) YCJA는 “사법외적 제재”의 요건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① 사법외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주정부에서 사법외적 제재 프로그램을 사전에 인가해야 하고, ② 내용 및 절차 등을 소년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③ 소년은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그 고지받은 내용 전부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동의이전에 변호인 선임 및 접견권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④ 사법외적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소년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⑤ 검찰은 소년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소년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법외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으며, 또는 소년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사법외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가족집단회의는 원래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관습에서 기원한 것인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FGC프로그램을 경찰단계의 위탁프로그램의 하나로써 활용하고 있다. FGC는 폭넓은 참여집단을 포함한다. coordinator(조정자), 피해자, 가해자, 가족 및 피해자와 가해자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 대표들이 포함된다. FGC과정은 피해자 및 가해자 자신관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범죄로 야기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한 집단토론, 및 활동계획(action plan)의 협상(negotiation) 등을 포함한다.

16) The Sentencing Act 2002, the Parole Act 2002 and the Victims' Rights Act 2002 all contain restorative principles and provide for restorative processes.

우고, 향후 자녀에 대한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회합(FGC)은 가족 그 자체가 전문가가 되며, 아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유연성과 창조성은 전문가들보다 앞설 수도 있으며, 가족과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발전시켰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더 강하게 헌신할 것이란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가족과 전문가간의 파트너십을 형성, 가족의 긍정적 잠재력과 장점을 세우는 데 목표를 둔다(Mousourakis, 2005, 2006).

3)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개혁¹⁷⁾: 영국은 지난 10년 전부터 소년사법체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였다(UK Home Office, 2003). 회복적 소년사법 실행을 이끄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근거는 1998년에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 대응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CDA)]이다.¹⁸⁾ 새로운 법을 통해 회복적 사법은 소년사법체계의 중심부분이 되었다. 피해자와의 접촉 및 피해회복은 Final Warning, Referral order, Reparation order, Action plan order and Supervision order 등을 통해서 모든 소년사법 처분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영국의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회복적 사법 모델은 특히 지역사회 제재(sentence of the community)와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새로운 소년사법제도를 지방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다기관 청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 YOT)이 창설되었고, Youth Justice Board(YJB)는 YOT 작업을 국가적 수준에서 조정하고 지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영국 소년사법체계 개혁의 핵심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균형적 통합모델"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철학과 지역공동체 사법의 원칙을 결합, 그 가치를 소년사법체계에 침투시키는 데 있다. 2004년 Youth Justice Board는 모든 소년사법개입에서 회복

17) UK ACPO (2003), ACPO Response to Restorative justice : Government's Strategy, www.thamesvalley.police.uk/about/rj/pdf/acpo1.pdf. 및 Home Office (2003), Restorative justice: Government's Strategy. www.homeoffice.gov.uk/docs2/restorativestrategy.pdf. 참조

18) 이 법은 지역사회의 치안질서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 지방정부, 보호관찰국 및 보건복지국, 자발적 민간조직 및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발전·수행하는데 이들 간의 공조체계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한다. 이 법은 일종의 균형적·회복적 지역사회사법(Community Justice)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적 사법을 핵심원칙으로 삼아 피해자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실무적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YOT를 위한 회복적 사법훈련은 Youth Justice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로 통합되었다. 그 핵심은 소년사법 실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 자격제도(Certificate)를 설립, RJ 프로그램의 공신력과 신임을 얻는 것이다(김은경, 2004b).

3. 회복적 사법 실행기반으로서 지역공동체 사법(community justice)의 이해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처우방안 또는 다이버전 방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이버전”이란 용어가 우리의 학계나 실무계에 등장하여 사용된 지는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다. 통상 다이버전이란 “형사제재의 최소화 또는 형사사법절차로부터 배제 또는 중지”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적 이해는 다이버전을 매우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인식케 한다. 다이버전 방향과 주체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 틀을 배제하고 있다. 즉 다이버전의 구체적인 실행기반 및 핵심주체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는 인식론상의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형사절차의 배제가 곧바로 다이버전 이해되는 기계적인 규정방식 하에서 현행 소년법상 각종 보호처분 역시 일종의 “다이버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절차의 배제가 곧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다이버전 효과” 즉 낙인의 최소화나 사회재통합을 자동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현행 소년보호처분의 한계와 딜레마에서 알 수 있다. 낙인효과와 최소화란 사실상 형사사법절차의 배제를 통해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가해자)를 둘러싼 상처받고 파괴된 여러 관계들(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등)의 회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이버전 정책은 단순히 형사절차의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을 부분적으로 지역공동체(지역사회)로의 권한이양 또는 원격적인 범죄통제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상, 영미권 국가에서 “Diversion”이란 용어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와는 별도의 시민영역의 규율

기제 및 대안적 분쟁해결 체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성장에 힘입은 지역공동체사법(community justice) 철학과 실천기반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각국의 소년사법은 지역공동체(community) “위탁(referral)” 및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 중심으로 제도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 또한 소년사법 정책은 예전의 사법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ies partnership)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1980년 후반부터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청소년 범죄에 작용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역사회내의 여러 관계기관들, 가정, 학교, 종교기관, 상담기관, 여가시설, 행정기관, 보호관찰기관, 그리고 경찰 등이 어떻게 조화롭게 연계되어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명료화하고, 서비스전달 능력향상을 위한 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이 가능했던 밑바탕에는 지역공동체 사법(community justice) 패러다임으로서 중심이동, 범죄통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간의 범죄통제 거버넌스 체계재편이 핵심 축이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는 ‘부모책임법(parental responsibility law)’¹⁹⁾을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입법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김지선, 2005). “부모책임법”은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론 및 경험연구결과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비행과 가족(특히 부적절한 양육)의 상관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제가 가능한 근거는 지역공동체사법(community justice)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았다.

19) 부모책임법은 자녀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심리과정에 부모의 의무적 참여, 심리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 피해배상을 위한 금전적 책임, 치료비용에 대한 금전적 책임 및 기타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부모의 의무적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에의 의무적 참여, 사회봉사명령, 벌금이나 구금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흔히 “자녀양육명령(parenting order)”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다. 부모교육명령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한 형태로서 부모(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에 참가할 의무를 부여하는 일종의 사법명령이다.

IV.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실천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 회복적 사법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회복적 사법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 그것은 원리적으로나 도구적으로 훌륭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은 재판과정에 호소하지 않고서도, 가해자의 책임수용과 피해자의 요구,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유(healing)를 촉진시킬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적 대응보다는 갈등적 위치로부터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강한 잠재력을 지닌다. 수많은 연구들이 평가하고 있듯, 회복적 사법전략은 피해자의 관여와 회복경험을 증대시키고, 가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수용을 강화시켰으며, 공정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설사 장기적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더라도, 회복적 사법이 다른 처분보다 더 나쁜 실천은 아니며, 특별히 소년사건을 다루는 보다 나은 대응방법인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이루어진 학교폭력을 둘러싼 사법서비스 욕구조사(김은경·이호중, 2006)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현행 법제도 및 처리 관행은 당사자들의 이해와 관심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⁰⁾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피해자와 가해자 및 학교교사 등)은 기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기존 사법제도에서처럼 가해자-피해자의 이분도식에 따른 처벌로서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교육기관(학교) 중심으로 소위 “자치”라는 허울(미명)하에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즉 기존사법절차나 학교중심절차가 아니라, 학교공동체를 주축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제3의 전문적 개입(조정센터)에 대한 욕구가 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¹⁾ 가장 원하는 문제해결방식은 “처벌”이나 “금전 배상”이 아

20)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현행 학교 및 사법기관 사건처리경험에 만족했던 수준은 매우 미약했고, 피해자는 신변안전감의 회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21)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에서 “분쟁조정” 기능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

니라,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였다. 이는 “회복적 사법”에서 “재통합적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방법이자 관계회복적 요소로서, 우리나라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해결방법은 “회복적 사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은 기존의 법제도절차보다는 역동적이고 관계중심적이며, 사법서비스에 대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원한다는 점이다. 즉,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기존 사법제도절차보다는 회복적 사법실천을 통해서 보다 잘 대응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김은경 · 이호중, 2006).

2. 회복적 사법의 실천토대를 위한 관련법 · 제도의 개선

현행 법 하에서도 ‘전환처우(diversion)’가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복적 프로그램 개입이 가능하다. 가령, 기소 또는 소년부송치 이전단계에서는 경찰 또는 검찰이 적절한 대상사건을 회복적 프로그램에 위탁할 수 있고, 사건이 법원이나 소년부로 진행된 경우에도 판사가 직권 또는 검사청구에 의해 회복적 조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입법하에서의 조치들은 분명한 회복적 관심과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형사법적 목표에 따라, 그 가치가 왜곡되거나 잠식될 개연성이 있다(Umbreit, 1998; Trenczek, 2003). 따라서 회복적 사법의 관점과 원칙을 결합한 입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회복적 소년사법의 유효한 실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 즉 법률적 및 실천적 토대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1)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 : 현행법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재량적 다이버전”의 형태로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토대일 뿐이다. 현행 법규정 하에서 회복적 실천은 내재적으로 왜곡

작 교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분쟁조정”이었다. 특히, 일반 민사조정이 아닌 범죄문제와 관련된 “분쟁조정”은 고도의 ADR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행과 같이 비전문적인 ‘자치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종종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된 방향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높다(이호중, 2004b). 왜냐하면, ‘화해중재’ 해결책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처벌의 기능에 종속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²²⁾ 또한 회복적 사법철학이 형사사법담당자에게 잘못 전달될 위험성도 높다. 즉 현행법 하에서 회복적 실천은 마치 형사사법담당자들을 위한 ‘도구’처럼 인지하도록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소년입법의 원칙과 가치 우선성을 분명히 하고, 회복적 사법실행을 위한 이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본격적인 소년법 개정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① 형사사법기관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사건을 넘기도록 하는 “의무적 다이버전”의 형태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호중, 2004b). 뉴질랜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경미한 소년사건은 경고로 처리되지만 그보다 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소년법원에 송치한 후 소년법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회부하도록 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의무적 다이버전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의무적 다이버전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②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프로그램 위탁이 가능하도록 “소년법 경찰 다이버전 권한”의 근거를 소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호중, 2004a).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조기시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경찰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들에 대해서 회합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 조기 개입과 종결이 가능도록 하는 법적 준거와 사건위탁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²³⁾

22) “회복적 사법”은 전통적 사법제재와는 다른 ‘제3의 길’로 제시된다. 이론적으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조정, 회합)은 전통적 처벌목적 및 제재의 수직적 체계와는 양립할 수 없다. 그것은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갈등해결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두고, 피해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배상이나 처벌을 넘어선다. ‘갈등의 조정’과 ‘처벌(처우)’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조정이나 회합은 단순한 처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법률 원칙, 즉 법률 하에서 평화의 회복을 이룬다는 자체특성을 지닌다.

23) 경찰은 현재 형사실무를 개선, 수사단계에서 ‘소년법에 대해 경찰이 종국적인 처분권한을 갖는 선도조건부 훈방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규정한 [소년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연내 국회제출 예정이다.

2) 소년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유기적 연계 및 “위탁”체계 구축: 소년법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소년사법체계와 복지행정체계간의 연결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들이 새롭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와 2007년 개정 입법예고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규정을 내실있게 구성·제도화함으로써, 사법기관에 의한 “위탁(referral)”²⁴⁾을 통하여 사법외적 제재(Extra-judicial Sanctions)의 실질적 시행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사회중심 개입전략 및 민간참여 인프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는 12세미만의 아동범죄자 및 조발 비행자를 적절하게 처우할 수 없는 현행 소년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행 소년법 처우시스템이 소위 “위기개입과 관리”라는 이념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급격하게 교정시설 수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비행·범죄청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처우의 차별화와 누진적 제재의 원칙 하에 소년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복지지원 네트워크가 종합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체계적·통합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대책』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위험대상 수준별 개입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즉 ① 특별 예방관리 차원, ② 소년사법기관의 전환처우(diversion)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지원의 차원, ③ 소년법상 보호처분 실행단계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지원의 차원, ④ 범죄소년들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회복적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4) “위탁(referral)”이란 사법기관이 소년을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가령 캐나다 소년사법(YCJA) 제6조 제1항 사법경찰은 청소년을 사법처리하는 대신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재사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소년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됨. 위탁은 오락프로그램, 상담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경찰조사단계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강제된 위탁동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을 이용하기 전에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 변호인 선임권 및 변호인과 접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3. 회복적 사법의 실천을 위한 공공지원체계의 구성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이론적·법리적 검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회복적 사법철학에 대한 공유된 이해, 정책담당자들의 관심과 의지, 유효한 실천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견고한 조사연구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1)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수행기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과 토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쩌면 법률적 토대에 우선하는 과제이다. 사실상 회복적 사법의 성과는 법적 절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과정의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담당할 전문화된 기관을 확보하고, 회복적 사법실무에 관련된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회복적 사법이념과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 민간기관들이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민사회 참여운동이나 범죄피해자보호운동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에서,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확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더욱이 회복적 사법실천과 조정기술에 익숙한 전문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실행을 위해서는 수행기관 및 재정자원 확보, 구체적 실천프로그램 개발, 전문 실무인력의 훈련양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003년 이후 각 검찰청별로 조직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화해중재”²⁵⁾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피해배상에 관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피해자지원서비스 중 화해중재는 9.7%(총 5,494건 중 531건)에 이르고 있다(최영승, 2006:202). 화해중재는 대체로 사기 등 비폭력적 재산범죄 사건에서 검사의 의뢰에

25) 중재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중재”라고 보기 힘들다. 현재의 실무를 보면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알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의과정에 조정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조정제도와는 달리 제3자의 적극적 역할을 상정하는 “알선”에 가까운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조정을 하며, 합의에 이르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보면,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²⁶⁾ 기본적으로 [피해자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행되는 “화해중재”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1) 하나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실천방안이라는 점, (2) 다른 하나는 “피해자보호”의 프리즘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검찰이 수행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회복적 실천을 위한 강력한 실행지침이 준비되지 않는 한, 현행 법제하에서 ‘화해중재’는 자칫 다른 전환처우 수단과 같이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화해중재”는 다분히 검찰이 고소사건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려는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의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최영승, 2006:214). 또한 외국의 회복적 실천모형에 있어서 과정진행자로서 가장 배제되어야 할 인력인 법률전문가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변호사는 오직 법률가의 관점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를 조정할 뿐, 자율적인 담화과정을 통한 감정적 해소와 관계회복이라는 핵심가치는 전혀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실무상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화해중재는 회복적 사법실천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중심성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요소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피해자중심성은 보다 핵심가치인 상호 자율적인 합의과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균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것, 특히 이미 관계에 내재된 권력불균형에 맞서 대항적 평형성을 유지시켜주는 것, 이러한 요소가 바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권리보호”의 프리즘으로 “회복적 사법”에 접근하는 정책적 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 보다는 “지역사회 사법”또는 “대안적 분쟁해결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6) 반면에 이러한 화해중재가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김용세, 2004).

2)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위하여, 형사사법기관과 프로그램 실행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간에 공유된 인식기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상 법률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실무담당자들의 사법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을 이끄는 실무담당자들에게 회복적 사법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은 관료제화되고, 처벌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의 불완전한 법률적 토대를 보완하고, 유효한 회복적 실천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적절한 사건기준 및 개입을 위한 기관간 실무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험들에 비추어 볼 때, 소년사법체계 밖에서 대안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는, 보다 강력한 입법적 지침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안적 조치의 적절한 이용, 유형 및 각각 적절한 대상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는 뉴질랜드와 같은 의무적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실무지침이나 범부처 편람 등을 통해서, 특별히 경미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준-의무적’방식으로 회복적 개입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모델의 working definition과 framework, 가이드라인과 실무지침 등을 마련하는 것은 실무자들 간의 공유된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3) 회복적 조정실천을 지원·조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구성

한국과 같이 조정실무제도가 미발전된 나라에서는, 구체적 성과와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국가적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실무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회복적 사법에 대한 자생적 발전토대가 약한 대륙법계 국가들처럼, 위로부터 모델을 도입할 경우, 일관되고 안정적인 실행을 확보하고, 실천방안의 신뢰도를 높이며 성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영역 내 조율을 위한 구심기관을 구성하고 있다. 가령, 독일의 소년사법지원사무국, 프랑스의 INAVEM, 오스트리아의 ATA, 네덜란드의 HALT, JiB 등을 통해 NGO의 자원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심기구의 역할은 여러 민간기관의 조정실천을 조율하고, 회복적 사법에 대한 대중교육과 전문가훈련을 제공하며, 지역적 실천방안 설립을 지원하고, 정부 및 사법체계와의

협력 속에서 평가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상, “조정자” 능력과 신임은 회복적 사법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안적 분쟁해결프로그램의 발전에 따라 각 분야별 “조정자” 전문 양성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 외국 입법모델 도입의 신중한 고려와 예비 시험프로젝트의 중요성 : 최근, 회복적 사법 도입과 관련하여, 실무상의 실용적 이유(즉 형사법체계의 상동성)를 들어, 영미식 실무모델 보다는 독일에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정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김용세, 2003: 366)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일정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회복적 사법은 기본적으로 실체법체계의 본질과 특성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각국의 입법모델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바로 실천모델과 사법체계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회복적 사법은 형사법체계와는 전혀 다른 이론적·철학적·실천적 바탕에서 출현하였고, 전혀 다른 법률원칙을 지향한다. 많은 주창자들이 주장하듯, 어쩌면 회복적 사법원칙은 사법체계내(within)에서보다는 사법체계밖(outside)에서 더 효과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특히, 독일식 입법모델의 도입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회복적 사법원칙에 근거한 EU관점에서 볼 때, 독일식 모델은 “서로 잘 통합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과 한계가 없으며 모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정의 실천에 불리하기 조차하다(Löschnig-Gspandl, 1999)”는 비판을 받고 있다(Trenczek, 2003:277 재인용). 그 주요한 원인은 형사법적 관점에서 기인한다. 즉 조정을 전환처우적 관념과 연결짓는 기존방식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교육적 처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균형을 모색하는 해결책을 소년에게 양형으로서 부과하는 모순을 초래하였다. 결국 독일에서의 조정실천은 갈등해결의 치유책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와 싸우는’ 또 다른 도구로서 등장한 것이다. 독일의 회복적 사법실천은 여전히 전환이 요구되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Walther, 2000:275). 여기에서 중요한 비판점은 회복적 사법이 형사사법체계에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형사사법체계에 의해 인지되고 남용되는가에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식 입법모델의 도입은 결국 동일한 시행착오를 답습하게 될 개연이 높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실체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 모델 및 회복적 실천방안을 아무런 선택적 적응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입법모델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실천모델에 따른 예비실험 연구과정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 각국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회복적 모델을 제도화하기까지 끊임없는 예비실험과 평가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실천을 “유행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기존의 방안들에 덧씌우기 식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행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김용세 (2003),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와 회복적 사법’, 형사법연구 제20호, 347-373.
- 김용세 (2004),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활용가능성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한국피해자학회 발간), 제12권 제2호.
- 김은경 (2004a), ‘캐나다 소년사법의 새로운 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제82호.
- 김은경 (2004b),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 정책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 이동원 (2003),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주관 협동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 이호중 (2006),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정래 (1999), ‘권위적 간섭주의와 아동의 참여권’, 아동권리연구 제3권 제1호, 아동권리학회: 21-39.
- 김지선 (2005), 법원의 부모교육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 2002, 2003, 2004, 2005 범죄백서.

- 이호중(2004a),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 경찰의 전문가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 형사정책연구(형사정책연구원 발간) 제15권 제3호.
- 장영민 (2004),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Ⅱ, 제2권 형사사법개혁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청소년위원회, 1996-2005 청소년 백서.
- 최영승 (200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 연구(한국피해자학회 발간), 제14권 제1호.
- 최영신 (2001), 청소년폭력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청소년상담연구, 117.
- 홍영오 · 이수정 (2006), 범죄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dus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hmed, E., Harris, N. Braithwait, J & V. Braithwaite (2001), Shame Management through Reintergration, Cambridge Univ. Press. Melbourne.
- Bazemore, G. (1992), "On Mission Statements and Reform in Juvenile Justice: The Case for the Balanced Approach", Federal Probation 56(3).
- Braithwaite, J.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sberg et al. (1995), Guide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serious, violent and chronic juvenile offender,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ttion.
- Miers, D. (2001), An International Review of Restorative Justice, Crime Reduction Research Series Paper 10, Home Office, UK.
- Mousourakis, G. (2005), "형사화해의 실무현실과 발전전망 : 뉴질랜드, 호주

“, 한국피해자학회 춘계국제학술회의.

Mousourakis, G. (2006),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회합: 정책과 현행 실무개관“, 한국피해자학회 정기학술대회.

Sharp Susan (1998), *Restorative Justice: A Vision for healing and change*, Mediation and Restorative Justice Center, Edmonton, Alberta, Canada.

Trenczek (2003), "Within or Outside the System? Restorative Justice Attempts and the penal System", in : Weiterkamp/Kerner (eds.), *Restorative Justice in Context*, pp.272-281.

UK ACPO (2003), *ACPO Response to Restorative justice : Government's Strategy*, www.thamesvalley.police.uk/about/rj/pdf/acpo1.pdf.

UK Home Office (2003), *Restorative justice : Government's Strategy. Criminal Justice System*, www.homeoffice.gov.uk/docs2/restorativestrategy.pdf.

Umbreit, M. (1998), "Avoiding the marginalization and 'McDonaldiza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 A Case study in moving toward the mainstream". In G. Bazemore & L. Walgrave (eds.),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Van Ness, D. W. (1999), 'Legal Issues of Restorative Justice', in Bazemore and Walgrave (eds.),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Repairing the Harm of youth Crime*, Criminal Justice Press, Monsey, NY.

Walgrave, L. & J. Mehlbye (1998), 'Confronting Youth in Europe', *Juvenile Crime and Juvenile Justice*, www.afk.dk/eng98/juvenile.htm.

Walther, S. (2000), "Reparation in the German Criminal Justice system: What is and What remains to be don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vol. 7; 265-280.

Zehr, H. (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Scottsdale, PN: Herald Press.

"Reforming Juvenile Justice for 21th Century : the potential of
restorative justice"

Kim, Eun-Kyung*

This paper is designed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and limits of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and its responding trends on young offenders, and suggest the fundamental philosophy and new paradigm for reforming juvenile justice, that is so-called the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what restorative justice is, what it can mean at the community level, and what is important for sound and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principal features and practices of most recen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developed in the several western jurisdictions, this suggests the recommendations to change into "good practices" to improve the best treatment possible fro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주제어 :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소년사법, 회복적사법, 지역공동체사법

Keywords : Young Offender, Juvenile Crime, School Violence,
Juvenil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Community Justice

*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Ph.D. in Sociology